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2013. 11. 26.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 1. 경 과

의안 제261호로 2013년 11월 14일 신현도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명시함.(안 제2조, 안 제3조)
- 나.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사유를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유를 규정함.(안 제6조)
- 라.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등을 명시함.(안 제7조 ~ 안 제9조)
- 마. 의견청취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안 제11조)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 3. 17 시행됨에 따라 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영등포구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사유를 명시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유와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 전 작성한 종이 지적도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토지경계가 일치 하지 않아 이웃 간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이러한 잘못된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주민의 불편과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자 2030년까지 진행되는 중장기 국가사업임.

-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법에서 명시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관 련 법 령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시·군·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군·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시·군·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시·군·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시·군·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